

고 발 장

사 건 약사법 위반

고 발 인 1. 대한약침학회
서울 강서구 가양동 26-27 대한한 의사협회 4층
대표자 회장 강대인
연락처 : 02)2658-9051~3

2. 강대인
서울 강남구
연락처 : 017-228-7533

고발인들의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좋은세상 담당변호사 심정구, 민규식, 이금호

피고발인 1. 정경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해담한의원
연락처 : 02)518-XXXX

2. 경만호
서울 용산구 이촌로 46길 33(이촌1동 302-75)
연락처 : 02)794-2474

위 사건에 관하여 고발인의 고발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발인 경만호 및 정경임에 대하여 약사법위반의 점으로 고발하는바, 혐의사실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요 지

피고발인 정경임은 한의사, 피고발인 경만호는 의사로서,
피고발인 정경임은 일자불상경(2010. 9. 3.경부터 2011. 6. 17.경 사이) 한의사만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인 약침(소염)을 한방치료행위로서 사용하는 외에 이를 임의로 판매(수여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발인 경만호에게 임의로 판매(수여를 포함)함으로써 약사법 제44조 제1항 전단의 약사법위반죄, 한의사만 취급 가능한 한의약품을 취급 및 취득할 수 없는 의사인 피고발인 경만호는 이를 임의로 취득함으로써 약사법 제44조 제1항 후단의 약사법위반죄를 각 범하였는바, 피고발인들을 각 약사법위반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들의 관계

고발인 대한약침학회는 사)대한한 의사협회 산하의 정회원학회이고, 고발인 강대인은 대한약침학회의 학회장으로서 한의사입니다. 피고발인 정경임은 한의사이고, 피고발인 경만호는 의사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 중략 -

3. 피고발인들의 죄책

가. 약사법 제44조 제1항 등 법률의 규정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약사법 제2조 제1호는 약사법에서 사용되는 ‘약사’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면서 ‘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포함하여 위 정의 규정 이하의 조항에서의 ‘판매’에는 ‘수여’가 포함됨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는바, 피고발인 정경임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의약품의 판매(유상 또는 무상임을 불문)에 해당됨에는 의문이 없고, 이를 취득(유상 또는 무상임을 불문)한 피고발인 경만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의약품의 취득에 행됨에도 의문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판례의 태도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의 해석에 관하여는 최근인 2011. 10. 13.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도6287 판결

【의료법위반(예비적죄명:의료법위반교사)·약사법위반】

【판시사항】

[1]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약사법(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약사법에서 사용되는 ‘약사(약사)’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면서 ‘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포함하여 위 정의규정 이하 조항의 ‘판매’에는 ‘수여’가 포함됨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는 점, 구 약사법은 약사(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며(제20조 제1항), 의약품은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엄격한 의약품 관리를 통하여 의약품이 남용 내지 오용되는 것을 막고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고자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인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의 경우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약사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 것이고, 따라서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살펴본 바와 같이, 판례는 “(유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는 물론) 결국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는 것으로, 피고발인 정경임이 피고발인 경만호에게 위 약침(소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여하여 판매한 것은 위 판례에 따라 구 약사법(2007. 10. 17. 개정되기 전) 제44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 개정 약사법(2007. 10.

17.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임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습니다 (개정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의 개념을 추가로 특정하여 개정 되었을 뿐입니다).

다. 피고발인들의 각 약사법위반죄

그렇다면, 피고발인 정경임이 약사법 제44조 제1항 전단의 판매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의약품인 약침(소염)을 판매하였고, 피고발인 경만호는 약사법 제 44조 제1항 후단의 취득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취득하였는바, 피고발인 들은 각 약사법위반죄를 범한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발인들의 각 약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방 법

1.	증제1호증	보도자료내 약침사진	1부
2.	증제2호증	택배회사 확인서	1부
3.	증제3호증	통장사본	1부

2012. 4. .

고발인들의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좋은세상

담당변호사 심 정 구

담당변호사 민 규 식

담당변호사 이 금 호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귀중